

## 급식물품대금 추심금 청구소송

<b>소송종류</b>	민사소송	<b>법원명</b>	인천지방법원
<b>사건번호</b>	2015가소 ○○○○○	<b>사건유형</b>	추심금
<b>원고</b>	◇◇◇◇	<b>피고</b>	인천광역시 대표자 교육감
<b>판결선고일</b>	2016. 3. 25.	<b>비고</b>	
<b>사건개요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원고는 학교급식물품을 공급하던 ○○○가 운영하는 ○○○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로 소외 ○○○에 대하여 2014타채○○○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은 자임</li> <li>- 제3채무자인 교육감에게 위 추심명령이 2014. 12. 22. 송달되었으나 현재 까지 지급하고 있지 않아 추심금을 집행하라는 소 제기</li> </ul>		
<b>주문</b>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피고는 원고에게 14,149,31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. 11. 20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</li> <li>2. 소송비용 중 1/10은 원고가,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.</li> </ol>		
<b>청구취지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피고는 원고에게 14,149,31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. 12. 23.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당일까지는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</li> </ul>		
<b>판결이유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○○○와 ○○○ 사이에 ○○○이라는 상호의 사업체를 공동 경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합이 성립되었고, ○○○가 위 사업체 경영을 위하여 원고와 사이에 체결한 근로계약은 보조적 상행위로 봄이 상당하므로,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임금 지급의무는 위 동업체의 조합채무로서 그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유효함.</li> <li>- 제3채무자로서 정당한 추심권자에게 변제하면 그 효력은 모든 채권자에게 미치고, 압류된 채권을 경합된 압류채권자 및 또 다른 추심권자의 집행채권액에 안분하여 변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.</li> <li>- 지연손해금은 추심명령이 발령된 후 압류채권자로부터 추심금 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라고 할 것인바 지연손해금은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인정</li> </ul>		